

臺灣 商標法 改正規則

臺灣은 지난 10月19日 商標法 施行規則을 一部 改正 公布, 公布日부터 施行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改正된 內容을 소개한다. <編輯者 註>

第 1 條 本細則規定의 根據

본세칙은 상표법(이하 본법이라함)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한다.

第 2 條 商標登錄出願

본법의 규정에 의해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때는 제24조에 의거 상품의 유별을 지정하여 다음 상품의 명칭을 열거하고, 상표 주무관청의 규정에 의거 출원서에着色을 지정한 상표견본 15통을 첨부하며, 상표견본에 색채가 있는 때는 별도로 白紙의 견본3통을 첨부 해야 한다.

2. 상표견본은 견고하고 광택이 있는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 縱橫은 5센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第 3 條 外國人의 出願

외국인이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수속을 할때는 國籍證明書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법인 일때는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한다.

2. 前項의 증명서는 중화민국 현지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지정한 기구의 査證 또는 현지 재판소의 認證이 없으면 안된다.

제 4 조 서류의 중국어역

국적증명서 및 외국법인 증명서 또는 그 대리인의 위임장이 외국어로 된때는 中國語譯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기타 송부한 서류 자료가 외국어로 된 때는, 상표 주무관청은 중국어譯의 첨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5 조 대리인의 委任·改任

대리인이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 수속을 할때는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며 또 대리인의 권한을 기재해야만 한다.

2. 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출원인에게 대리인의 개임을 통지할때는 당해 대리인에게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6 조 査定書의 정의

본법 제15조에 정한 상표 주무관청의 査定書라 함은 공고사정서, 거절사정서, 이의사정서 및 취소 처분서를 말한다.

제 7 조 등록증의 교부

상표등록증에는 상표견본을 첨부하며, 상표 주무관청이 날인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 8 조 등록증의 재발행

상표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때는 상표전용권자는 이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증을 재발행한 때는 구 등록증의 폐기를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9 조 출원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출원인 또는 그대리인의 성명·명칭·주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인감에 변경이 있는 때는 상표주무관청에 대하여 변경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0 조 抄錄의 교부

상표주무관청이 교부하는 서류, 상표견본의 복사는 원본과 상위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언을 주기 해야만 한다.

제 11 조 증거물건의 반환청구

상표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 및 물건에 관하여 제출

자가 반환을 요하는 취지를 미리 언명한 때는, 당해사건의 확정후 30일내에 수령수속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제12조 연합, 방어 標章의 출원

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상표 또는 방어 표장의 등록출원을 할때는, 그 正商標가 이미 등록되고, 또는 공고된 때는 등록증 또는 공고결정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조 연합, 방어 標章의 번호, 존속기간

연합상표 또는 방어 標章의 등록번호 또는 공고번호는, 그 正商標및 연합상표 또는 방어 標章의 등록증 또는 공고결정서에 상호 기재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연합상표 및 방어표장의 존속기간은 그 正商標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正商標가 취소되고 또는 심판에 의한 등록이 무효로 될때는, 그 연합상표및 방어표장도 따라서 취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14條 出願人 名義變更

본법 제38조에 의거 출원인명의로의 변경을 할때는 원출원인과 연서하며, 또 합병의 승계인것 및 그 영업을 이전한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15條 登錄日의 基準

本法 제21조 제1항에 정한 등록일이라 함은 등록의 허가에 의해 교부된 등록증에 기재된 日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구등록의 통합

동일인이 개별로 2이상의 동일상표로써 상표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갱신등록을 출원한때, 지정상품이 제24조에 의해 同類의 것이 있다면 상표주무관청은 통합해야하고, 그의 전용기간의 계산은 최선으로 등록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증거의 제출의무

상표전용권자가 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 갱신등록을 출원할 때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이외에 출원전 2년 이내에 사용되고 있는 증명을 첨부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에 의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때는, 그의 이유로 서술해야만 한다.

2. 전항갱신등록이 허가될때, 상표주무관청은 상표

등록증에 갱신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반환한다.

제18조 사용허락의 인가신청

상표전용권자가 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그 상표의 사용 허락을 신청할때는, 감독지배의 방법 및 품질보증을 기재한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상표 등록증및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前項使用許諾의 申請이 허가된 때, 상표주무관청은 상표등록증에 허락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반환한다.

第19條 商標의 讓渡

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전용 실시권의 양도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이전등록을 출원할 때는, 본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이외에, 그 영업과 함께 이전한 것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외국의 상표인 때는 중화민국에서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며, 승계에 의한 이전에 대한 등록을 출원할때는, 合法的 승계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前項의 이전등록이 허가된 때, 상표 주무관청은 상표등록증에 이전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반환한다.

第20條 正商標의 移轉

정상표를 이전할때는, 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연합 상표및 방어표장도 병행하여 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21條 제출서류의 記載事項

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제출할 出願書 또는 기타의 물건에는 상표의 명칭, 지정상품의 유별 및 출원인의 성명, 명칭,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고, 이에 등록 또는 사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등록번호 또는 사정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22條 출원일의 인정

상표등록의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절본을 첨부하여 상품류별, 상품명칭을 기재한 출원서가 상표주무관청에 송달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우송된다면 발송 우체국의 日付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원중에 있어서 상품의 류별및 상품명칭의 변경

또는 상표전본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변경을 신청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第23條 手續書類의 訂正

상표출원 또는 기타 수속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方式 또는 서식에 반하거나 비용을 납부 또는 출원서, 상표전본이 불명료 또는 불완전한 때에는, 상표주무관청은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통지해야 한다.

2. 출원인이 前項의 기한내에 보정한 때는 그 출원일은 원출원일에 준한다.

제24조 상품분류

상표등록의 출원인은 다음에 정한 규정에 의거,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유별 및 상품명칭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조 서어비스 마크의 분류

서어비스마크의 출원인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 그 서어비스 마크를 사용하는 영업유별을 지정해야만 한다.

제1류 교육 및 오락

제2류 신문 및 통신

제3류 은행 및 보험

제4류 운수 및 창고

제5류 광고 및 선전

제6류 건설 및 수선

제7류 음식여관 및 여행

제8류 상품의 전적 및 입찰의 대리, 상업정보의 제공 및 인증

제9류 촬영 및 인쇄

제10류 미용

제11류 컴퓨터프로그램의 설계 및 데이터의 처리

제12류 他類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서어비스

2. 출원인이 前項 제12류에 출원할 때에는, 그 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정해야 하고 또 영업의 성질이 다른 때에는 1건으로 합병하여 출원할 수 없다.

第26條 改正前의 登錄商標의

商品類別 取扱

이 규칙의 개정전에 공고사정 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는 상품유별을, 이미 사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2. 이 규칙의 개정전에 출원하여 아직 公告査定되어 있지 않은 상표로서, 그 지정의 상품유별이 개정의 상

품유별과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개정의 상품 유별에 의하여 심사한다.

단, 同一 또는 유사의 상표를 改正前의 상이한 상품유별을 지정하여 前後에 등록출원한 상표로서, 개정상품유별에 있어서 同類로 되고, 후원의 상표가 이 규칙 개정전에 공고사정 또는 등록되어 있을 때는, 선원의 상표는 출원시의 상품유별에 의해 사정한다.

3. 신규 상품유별대조표는 별표와 같음.

第27條 동일출원에 있어서 協議

상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출원인간에 협의를 요할 때는 상표주무관청은 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각 출원인에게 협의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이 달할 수 없을 때는 상표주무관청은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각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첨으로써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第28條 異議 또는 無效審判에 있어서 利害關係人의 認定

他人의 商標가 自身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본법 제37조 제1항 제6호의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에 기재한 것을 이해 관계인으로 한다.

① 타인의 상표가 공중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상표가 중화민국에 기등록되어 있는 상표전용권자.

② 타인의 상표가 공중에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상표가 중화민국에 기등록되어 있는 상표전용권자 및 아직 중화민국에 등록 되어 있지 않지만 선사용한 자.

第29條 商號名稱의 取扱

본법 제3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또는 국내에서 저명한 상호명칭이라 함은 그 주요부분을 가르킨다.

단서에 규정하는 『상품이 동일 또는 동류가 아닐 때』라 함은 제24조의 상품유별을 인정 근거로하며 『상호 또는 법인의 영업범위내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 또는 법인의 등록된 영업항목을 기준으로하며, 등기의 영업항목에 구체적으로 상품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실제 경영의 항목을 참고하여 인정한다.

3. 먼저 등기한 法人이 그 명칭의 주요부분을 상표圖樣으로하여 등록을 출원하며, 후에 등기한 법인명칭의 주요부분과 동일한 또는 지정상품이 해당 후등기의

법인이 경영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류인때는, 후등기 법인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第30條 舊登錄상표의 存續期間

본법 개정전에 취득한 상표전용권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은 원허가와 같다.

第31條 異議등에 있어서

新舊法 適用의 原則

상표의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처리에 대하여 본법신규 규정의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상표의 이의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심사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표의 무효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등록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그 출원 또는 무효심판청구는 출원시 또는 무효심판청구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상표의 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취소신청시 또는 상표주무관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청구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서어비스마크의 準用

이 규칙의 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어비스마크에 준용한다.

제33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 KIPA通信 發刊 案内 ◎

本會는 86年 3月부터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誌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

<KIPA通信 編輯室>

한국발명특허협회 캠페인

1년앞선	특허관리	10년앞선	선진기업
발명하는	국민되어	복지국가	건설하자
이웃마다	믿는마음	거리마다	밝은마음

新刊 案内

工業 所有 權 法

저자: 辨理士 李 秀 雄 著

규격: 국판 748면

가격: 12,000원

工業 所有 權 法 要 解

저자: 辨理士 金學濟 · 金延洙 公편

규격: 국판 734면

가격: 9,000원

特 許 法 概 論

저자: 辯護士 鄭 寅 鳳 著

규격: 국판 722면

가격: 9,500원

商 標 法

저자: 辨理士 李 秀 雄 著

규격: 국판 552면

가격: 9,500원

意 匠 法 解 說

저자: 辨理士 尹 鍾 廉 著

규격: 국판 884면

가격: 15,000원

改 正 版

商 標 法 解 說

저자: 金 寬 衡(本會 研修部長)

규격: 국판 480면

가격: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